

수원고등법원 2024. 3. 28 선고 2023나2029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재판경과

수원고등법원 2024. 3. 28 선고 2023나20293 판결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. 7. 11 선고 2022가합400663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동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국제

담당변호사 박성수

변론종결 2024. 2. 29.

판결선고 2024. 3. 28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. 7. 11. 선고 2022가합400663 판결

주문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
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8. 9. 11. 접수 제733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’라 한다)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 및 원고 주장의 요지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(제2쪽 6행 ~ 제8쪽 2행)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.

○ 제5쪽 8행의 “되어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.”를 “되었다. 위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2023. 10. 19., 같은 목록 제2, 3, 4항 기재 부동산은 2023. 11. 22. 각 매각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,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.”로 고쳐 쓴다.

○ 제5쪽 10행의 “43호증”을 “43, 50호증”으로 고쳐 쓴다.

○ 제5쪽 11행의 “각 기재,” 다음에 “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,”을 추가한다.

○ 제6쪽 각주 3)의 내용 중 5행의 “571,2257,900원”을 “571,257,900원”으로, 6행의 “근저당권권의”를 “근저당권의”로, 7행의 “피고에게”를 “임혜자에게”로 각 정정한다.

2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가.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(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2다57904 판결 참조).

나.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,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이 모두 매각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23. 10. 19. 또는 2023. 11. 22.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는바, 원고로서는 더 이상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.

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.

3. 결론

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조효정, 판사 성충용, 판사 민정석